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제5장 배수공사 -

(A3 대비표)

<목차비교>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제6장 배수공사 6-1 철근 콘크리트 암거 6-2 콘크리트 배수관 6-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6-4 지수공 6-5 지하배수 6-6 연석	제5장 배수공사 5-1 노면배수 5-1-1 측구 5-1-2 연석 5-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5-1-4 맨홀 및 뚜껑 5-2 도로횡단배수 5-2-1 철근콘크리트 암거 5-2-2 배수관 5-2-3 파형강판 암거 5-3 지하배수 5-4 비탈면배수 5-5 시공시배수 5-5-1 흙쌓기 5-5-2 물막이 5-5-3 물푸기 5-5-4 가물막이 5-6 지수공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제6장 배수공사 6-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비탈면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제출물 1.3.1 본 지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현장 <u>콘크리트 치기</u>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지방서 14-1절, 14-3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u>KS F 4010, KS F 4016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u>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지방서 4-7절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u>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u>,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1.2 기 초 <u>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지방서 4-7절에 따른다.</u> 3.1.3 거푸집 본 지방서 7-4절 3.3에 따른다.	제5장 배수공사 5-1 노면배수 5-1-1 측 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서는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집수거, 등의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u>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u>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제출물 1.3.1 본 지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현장 <u>콘크리트 타설</u>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지방서 13-1절, 13-3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2.2.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u>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u>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본 지방서 3-7절에 따른다. 3.1.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의 경우에는 <u>터파기 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며</u>,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u>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u> 3.2 기 초 3.2.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 재료로서 본 지방서 3-9-2절에 따른다. 3.2.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본 지방서 5-3절에 따른다. 3.3 거푸집 본 지방서 6-3-3절에 따른다.	1. 도로의 배수시설은 배수구역에 따라 세분되며 배수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1) 노면배수 2) 도로횡단배수 3) 지하배수 4) 비탈면 배수 5) 시공시 배수로 구분되므로 배수시설의 분류체계에 맞게 지방서 목차조정 o 노면 배수용 측구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에 대한 규정추가 o 용어수정 : 치기→타설 o 노면 배수용 측구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에 대한 규정추가 o 제품의 품질 규정을 엄격히 함 o 도로공사 표준지방서 2003(건설교통부)에 의거 내용수정 o 시공성 확보 o 지방서 절 변경에 따라 변경됨	추 가 추 가 수 정 수 정 수 정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u>3.1.4 콘크리트 치기</u>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7-5절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u>구배</u>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구배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u>설치하여야 한다.</u> (5) <u>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u>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u>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 (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 <u>4-7절</u>에 따른다. 3.2 L형 측구 시공 3.2.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u>구배</u>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구배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2.5 콘크리트 <u>치기시에는</u>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u>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u>		<u>3.4 콘크리트 타설</u> 3.4.1 본 시방서 6-4절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u>경사</u>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3.4.4 <u>경사가</u>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u>콘크리트를</u> 쳐야한다. 3.4.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u>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u>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3.4.6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u>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이상의 철근을</u> 적정길이로 <u>30cm간격으로 설치한다.</u> 3.4.7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 <u>3-7절</u>에 따른다. 3.7 L형 측구 시공 3.7.1 L형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u>경사</u>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7.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7.5 콘크리트 <u>타설시에는</u>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u>비닐을</u> 깔아야 한다.		o 용어수정 : 치기→타설 o 용어변경 :구배⇒경사 o 용어변경 :구배⇒경사 o 다우웰 철근직경, 길이,간격을 규정함 o 용어변경 :구배⇒경사 o 용어수정 : 치기→타설 o 문맥 수정	수 정 수 정 추 가 수 정 수 정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3.2.6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3.7.6	분리막으로의 비닐깔기는 30c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o 문맥 수정		수	정																
3.2.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 (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7.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 (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o 용어수정 : 치기→타설		추	가																
3.2.8	팽창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신축이음부 전·후면은 실런 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3.7.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에 대하여 밀폐채움을 하여야 한다.	o 팽창줄눈에 방수고려함																			
3.2.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7.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o 용어변경 :성토부⇒흙쌓기		수	정																
3.2.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성토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3.7.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o 외래어 표기방식 변경		수	정																
3.2.11	기계 시공	3.7.11	기계 시공	o 힘의단위로 표현		수	정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구배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구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측정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o 용어변경 :성토부⇒흙쌓기		수	정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측정안내선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o 용어변경 :성토부⇒흙쌓기		수	정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o 문맥 수정		수	정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4	U형 측구 시공	3.8	U형측구 시공	o 용어변경 :구배⇒경사		수	정																
3.4.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구배로 낮은 쪽에서 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8.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 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o 현장여건 반영																			
3.4.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8.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8.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9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o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03(건설교통부)에 의거 내용추가		추	가																
			표 5-1-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table><tr><th>항 목</th><th>규격치(mm)</th><th>측 정 기 준</th><th>비 고</th></tr><tr><td>기준고</td><td>±30</td><td rowspan="2">·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td><td rowspan="4"></td></tr><tr><td>폭 a3</td><td>-50</td></tr><tr><td>높이 h,h´</td><td>-30</td><td colspan="2" rowspan="2">·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td></tr><tr><td>연장 L</td><td>-20</td></tr></table>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폭 a3	-50	높이 h,h´	-30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연장 L	-20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폭 a3	-50																						
높이 h,h´	-30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연장 L	-20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6-6 연 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u>현장치기</u>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2.1.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따라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본 시방서 14-1절, 14-4절에 따른다. 2.1.2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6-5과 같다. 표 6-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table border="1" data-bbox="124 1003 1172 1144"> <tr> <td>구 분</td><td>L=600mm</td><td>L=1,000mm</td><td>비 고</td></tr> <tr> <td>과 괴 하 중 (kg)</td><td>1,600 이상</td><td>1,000 이상</td><td></td></tr> <tr> <td>흡 수 율 (%)</td><td colspan="2">5 이내</td><td></td></tr> <tr> <td>시험방법</td><td colspan="2">KS F 4006</td><td></td></tr> </table> 2.1.3 이음 및 바닥용 모르터는 1:2의 용적배합을 사용하고,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2.2.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따라 현장에서 인력치기 하거나 기계시공된 것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는 <u>본 시방서 14-1절, 14-4절에 따른다.</u> 2.2.2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압축강도 : $f_{28}=210\text{kgf/cm}^2$ (2) 골재의 최대치수 : 25mm (기계시공시 19mm) (3) 슬 럼 프 : 8cm 이하 (기계시공시 2~5cm) (4) 공기량 : 1~2% (기계시공시 2~5%)	구 분	L=600mm	L=1,000mm	비 고	과 괴 하 중 (kg)	1,600 이상	1,000 이상		흡 수 율 (%)	5 이내			시험방법	KS F 4006			5-1-2 연 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u>현장타설</u>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2.1.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따라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 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본 시방서 13-1절, 13-4절에 따른다. 2.1.2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5-1-2와 같다. 표 5-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table border="1" data-bbox="1205 995 2211 1190"> <tr> <td>구 분</td><td>L = 600mm</td><td>L = 1,000mm</td><td>비 고</td></tr> <tr> <td>과 괴 하 중(kgf)</td><td>1,600 이상</td><td>1,000 이상</td><td></td></tr> <tr> <td>흡 수 율(%)</td><td colspan="2">5 이내</td><td></td></tr> <tr> <td>시 험 방 법</td><td colspan="2">KS F 4006</td><td></td></tr> </table> 2.1.3 이음 및 바닥용 모르타르는 1:2의 용적배합을 사용하고,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2.2.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따라 현장에서 인력타설 하거나 기계시공된 것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는 <u>본 시방서 13-1절, 13-4절,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본 시방서 13-3-1절 2.1, 굵은골재 의 입도범위는 본 시방서 13-3-1절 2.2에 따른다.</u> 2.2.2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강도 : $f_{28} = 3.5\text{Mpa}(35\text{kgf/cm}^2)$ (2) 골재의 최대치수 : 25mm(기계시공시 19mm) (3) 슬럼프 : 5cm이하 (4) 공기량 : $4.5 \pm 1.5\%$ 2.2.3 <u>줄눈재</u> 본 시방서 13-7절에 따른다. 2.2.4 <u>거푸집</u>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 분	L = 600mm	L = 1,000mm	비 고	과 괴 하 중(kgf)	1,600 이상	1,000 이상		흡 수 율(%)	5 이내			시 험 방 법	KS F 4006			o 용어수정 : 치기→타설 (이후 동일한 내용 언급 안함) o SI 단위계로 변환 o 동결융해 저항성 확보 o 2.2.3, 2.2.4 내용추가	수 정 수 정 추 가
구 분	L=600mm	L=1,000mm	비 고																																
과 괴 하 중 (kg)	1,600 이상	1,000 이상																																	
흡 수 율 (%)	5 이내																																		
시험방법	KS F 4006																																		
구 분	L = 600mm	L = 1,000mm	비 고																																
과 괴 하 중(kgf)	1,600 이상	1,000 이상																																	
흡 수 율(%)	5 이내																																		
시 험 방 법	KS F 4006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도로공사 표준시방서(1996: 건설교통부) 306-2-3절에 따른다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2.3.1 골재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본 시방서 13-3-2절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5-1-3의 입도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5-1-3 재료의 입도범위 <table><tr><td>체 규 격</td><td>4.75mm</td><td>2.36mm</td><td>600μm</td><td>300μm</td><td>150μm</td><td>75μm</td></tr><tr><td>통과중량 백분율(%)</td><td>70-100</td><td>55-100</td><td>30-70</td><td>20-55</td><td>7-35</td><td>4-20</td></tr></table> 2.3.2 역청재료 (1) 역청재료 아스팔트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본 시방서 13-2절에 따른다. (2) 텍코트 텍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본 시방서 13-2절에 따른다. 2.3.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은 본 시방서 8-4절 2.5 또는 9-5절 2.6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혼합물의 배합표준은 표 5-1-4와 같으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표 5-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배합기준 <table><tr><td>종 류</td><td>골 재</td><td>석 분</td><td>아스팔트</td></tr><tr><td>배합율(%)</td><td>93</td><td>7</td><td>8</td></tr></table> 2.4 돌연석 2.4.1 돌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4.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 이어야 한다.			체 규 격	4.75mm	2.36mm	600μm	300μm	150μm	75μm	통과중량 백분율(%)	70-100	55-100	30-70	20-55	7-35	4-20	종 류	골 재	석 분	아스팔트	배합율(%)	93	7	8	o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03(건설교통부)에 의거 내용추가 	
체 규 격	4.75mm	2.36mm	600μm	300μm	150μm	75μm																						
통과중량 백분율(%)	70-100	55-100	30-70	20-55	7-35	4-20																						
종 류	골 재	석 분	아스팔트																									
배합율(%)	93	7	8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3.2.5 줄	눈	3.2.5 줄	눈	o 시공의 정확도 규정	추	가	
(1) 팽창줄눈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u>직각으로</u>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u>설계도서에 따라</u>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의 채움은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하여 작업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팽창줄눈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u>직각 및 수직으로</u>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u>설계도서에 표시한대로</u>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의 채움재(줄눈판)은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축줄눈	수축줄눈의 간격은 6m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콘크리트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하며, 줄눈 폭은 6mm로 한다. 줄눈을 절단할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축줄눈에 줄눈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2) 수축줄눈	수축줄눈의 간격은 6m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되,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하며, <u>수축줄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콘크리트커터로</u> 시공하며 <u>별도지시가 없는 한</u> 줄눈폭은 6mm로 한다. 줄눈을 절단할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축줄눈에 줄눈 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o 내용추가	추	가	
3.2.6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는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2.6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는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2.7 양생 및 보호	콘크리트 연석의 양생은 본 지방서 11-1절 3.16에 따르며, 습윤양생인 경우에는 최소 3일간 양생을 하여야 하며, 양생기간중에는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7 양생 및 보호	콘크리트 연석의 양생은 본 지방서 10-1절 3.16에 따르며, 습윤양생인 경우에는 최소 3일간 양생을 하여야 하며, 양생기간중에는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o 도로공사 표준지방서 2003(건설교통부)에 의거 내용추가	추	가	
3.2.8 되메우기	<u>양생이 완료된 후에는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u>	3.2.8 되메우기 및 뒷채움	<u>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다져야 한다.</u>				
3.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3.3.1 도로공사 표준지방서(1996: 건설교통부) 306-3-3에 따른다.	3.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3.3.1 기초의 준비 (1) <u>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가 이미 양생되었거나, 오래된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이거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면위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압축 공기 등으로 불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u> (2) <u>표면이 잘 건조되면 연석을 설치하기 직전에 본 지방서 9장에 규정된 재료 및 방식으로 텍코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연석이 접하는 부분바깥으로 텍코트 재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u> 3.3.2 깔기 (1) <u>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형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조절이 가능한 것 이어야 한다.</u>	o 도로공사 표준지방서 2003(건설교통부)에 의거 내용추가	추	가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2) 깔기시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pm 10^{\circ}\text{C}$를 초과할 수 없다. 기계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다짐도와 표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3) 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를 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4)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얻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3.3 이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해야 한다. (2) 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4 양생 및 보호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타설 후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4 돌연석 3.4.1 기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4.2 설치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4.3 줄눈 (1)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 (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2)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4 되메우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o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03(건설교통부)에 의거 내용추가	추 가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5-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o 도시지역 고속도로 배수고려 신설 함	추 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스틸그레이팅																											
		2.1.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 이라야 한다.																											
		표 5-1-5 스틸그레이팅 재료 기준																											
		<table><tr><td>항 목</td><td>시 험 방 법</td><td>기 준 (g/cm²)</td></tr><tr><td>아연도금 부착량</td><td>KS D 0201</td><td>4.1(직접법),4.2(염화안티몬법)</td></tr><tr><td>황 산 동</td><td>KS D 0201</td><td>5.0(황산구리시험)</td></tr><tr><td>밀 착 성</td><td>KS D 0201</td><td>6.1(육안), 6.5(해머시험)</td></tr></table>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g/cm ²)	아연도금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4.2(염화안티몬법)	황 산 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	밀 착 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g/cm ²)																											
아연도금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4.2(염화안티몬법)																											
황 산 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																											
밀 착 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																											
		2.1.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mm이내야 한다.																											
		2.1.3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tonf)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5-1-6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table><tr><td>종 별</td><td>총중량(t)</td><td>후륜일축하중 (kgf)</td><td>충격을 고려한 하중(kgf)</td><td>차량접지면적 Acm×Bcm</td></tr><tr><td>T = 20</td><td>20</td><td>8,000</td><td>11,200</td><td>20×50</td></tr><tr><td>T = 14</td><td>14</td><td>5,600</td><td>7,840</td><td>20×50</td></tr><tr><td>T = 6</td><td>6</td><td>2,400</td><td>3,360</td><td>20×24</td></tr><tr><td>T = 2</td><td>2</td><td>800</td><td>1,120</td><td>20×16</td></tr></table>			종 별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 (kgf)	충격을 고려한 하중(kgf)	차량접지면적 Acm×Bcm	T = 20	20	8,000	11,200	20×50	T = 14	14	5,600	7,840	20×50	T = 6	6	2,400	3,360	20×24	T = 2	2	800	1,120	20×16
종 별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 (kgf)	충격을 고려한 하중(kgf)	차량접지면적 Acm×Bcm																									
T = 20	20	8,000	11,200	20×50																									
T = 14	14	5,600	7,840	20×50																									
T = 6	6	2,400	3,360	20×24																									
T = 2	2	800	1,120	20×16																									
		2.1.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시된 설계 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mm 이내야 한다.																											
		2.1.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kgf/판 이상이 어야 한다.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u>2.2 콘크리트 및 철근은 이 시방서 6-4, 6-5절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u> <u>2.3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u> <u>2.3.1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없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의 자체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현장반입 제품에 대해 시험하여야 한다.</u> <u>2.3.2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2.1.1과 같다.</u>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u>3.1.1 시공자는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본 시방서 3-7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u> <u>3.1.2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3.2 시공준비 <u>3.2.1 콘크리트 타설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 6-5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u> 3.3 시공기준 <u>3.3.1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6-4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u> 3.3.2 구체공 <u>(1)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계획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u> <u>(2)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u> <u>(3)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u> 3.3.3 스틸그레이팅 설치 <u>(1)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u> <u>(2) 시공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u> <u>3.3.4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3-7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u>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5-1-4 맨홀 및 뚜껑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맨홀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지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2.1 맨홀뚜껑 및 사다리 2.1.1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2.1.2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2.1.3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본 지방서 6-5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콘크리트 타설은 본 지방서 6-4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o 노면배수 및 도시지역 고속도로 배수고려 신설함	추 가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3.3.2 맨홀구체시공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쇄흠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쇄흠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5)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3.3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도록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3.4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3.3.5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3-7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6-1 철근콘크리트 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통로 및 수로 등으로 사용되는 문형, 상형 및 아치형의 철근콘크리트 암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바리 및 비계 상세도와 전문기술자가 확인한 구조계산서(필요시) (2) 시공규모, 위치, 구배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2.1 시멘트 콘크리트 및 철근 본 시방서 14-4절, 14-5절 및 14-10절에 따른다. 2.2 이음부 지수판 이음부 지수판은 본 시방서 6-4절에 따른다.	5-2 도로 횡단배수 5-2-1 철근콘크리트 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를 통로 및 수로 등으로 사용되는 문형, 상형 및 아치형의 철근 콘크리트 암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3 용어정리 (1) 지수판 : 이음부에서 수밀을 위해 콘크리트 이음부에 묻는 동판, 스테인리스판, 인조고무판 등으로써 수밀성과 내구성이 큰 재료로 만들며 신축에 적응하는 구조로함. (2) 겹이음 : 철근이나 강판을 서로 겹쳐잇는 이음, 철근을 겹쳐이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을 좋게함으로써 철근의 응력을 크게한다. (3) 폼타이 : 타설직후의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유체압에 의해서 거꾸집판 이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 매어두는 인장재 1.4 제 출 물 1.4.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바리 및 비계 상세도와 전문기술자가 확인한 구조계산서(필요시) (2)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료 2.1 철근콘크리트 2.1.1 철근 본 시방서 13-10절의 각 규정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 본 시방서 13-4절의 각 규정에 따른다. 2.2 이음재료 2.2.1 이음부 지수판 본 시방서 5-6절에 따른다 2.2.2 이음부 채움 재료 본 시방서 13-7절 2.2에 따른다. 2.2.3 방수커버 아스팔트계, 고무계, 비닐(vinyl)계 등의 가공 재료로서 감독자의 승인 후 사용한다.	o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추가 o 시방서 절 변경 및 암거용 지수 판 세부규격 제시	추 가 추 가 수정 및 추가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2.3 기초재 본 지방서 4-9절에 따른다. 2.4 말뚝 암거의 기초로 말뚝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 지방서 14-9절에 따른다. 2.5 바닥 고르기 콘크리트 본 지방서 14-4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터파기 터파기는 본 지방서 4-7절에 따른다. 3.2 기 초 3.2.1 기초재 부설 및 지지력 확인 본 지방서 4-9절에 따라 기초재를 부설하고,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 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3.2.2 기초말뚝 암거의 기초를 기성말뚝으로 시공할 때에는 본 지방서 7-2-1절에 따른다. 3.2.3 바닥 고르기 콘크리트 기초바닥은 기초재를 깔은 후 바닥 고르기 콘크리트로 기초바닥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2.2.4 압거용 지수판 지수판의 종류 및 치수는 표 5-2-1의 값을 ,품질은 표 5-2-2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5-2-1 압거용 지수판의 종류 및 치수 <table><tr><th>종 류</th><th>두 께 (mm)</th><th>폭 (mm)</th><th>적 용</th></tr><tr><td>A형</td><td>5 이상</td><td>200 이상</td><td></td></tr><tr><td>B형</td><td>7 이상</td><td>300 이상</td><td>상 동</td></tr></table> 표 5-2-2 압거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table><tr><th rowspan="4">품 질</th><th>구 분</th><th>SI단위(MPa)</th><th>중력단위(kgf/cm²)</th></tr><tr><td>1/2 압축식 압축응력도</td><td>1 이상 9 이하</td><td>5 이상 90 이하</td></tr><tr><td>복원률(%)</td><td colspan="2">65 이상</td></tr><tr><td>1/2 압축시 돌출량 (mm)</td><td colspan="2">10 이하</td></tr></table> 2.3 기초재 2.3.1 본 지방서 3-9절에 따른다. 2.4 말 뚝 암거의 기초로 말뚝을 사용할 경우는 본 지방서 6-2-2절 또는 6-2-3절에 따른다. 2.5 바닥고르기 콘크리트 본 지방서 13-4절 2.2에 따른다. 3. 시 공 3.1 터파기 터파기는 본 지방서 3-7절에 따른다 3.2 기 초 3.2.1 기초재 부설 및 지지력 확인 기초재를 부설 후 허용지지력을 KS F 2444에 의거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기초 재로서 조약돌을 깔 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막자갈 또는 쇠석 등의 채움 재료로 충분히 매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기초 재료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소형 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2 기초말뚝 기초말뚝은 사용할 경우에는 본 지방서 6-2-2절 또는 6-2-3절에 따른다. 3.2.3 바닥 고르기 콘크리트 기초바닥은 기초재를 깔은 후 바닥 고르기용 콘크리트로 기초바닥 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종 류	두 께 (mm)	폭 (mm)	적 용	A형	5 이상	200 이상		B형	7 이상	300 이상	상 동	품 질	구 분	SI단위(MPa)	중력단위(kgf/cm ²)	1/2 압축식 압축응력도	1 이상 9 이하	5 이상 90 이하	복원률(%)	65 이상		1/2 압축시 돌출량 (mm)	10 이하		o 기초재의 종류별 다짐장비 규정	추 가 추 가
종 류	두 께 (mm)	폭 (mm)	적 용																									
A형	5 이상	200 이상																										
B형	7 이상	300 이상	상 동																									
품 질	구 분	SI단위(MPa)	중력단위(kgf/cm ²)																									
	1/2 압축식 압축응력도	1 이상 9 이하	5 이상 90 이하																									
	복원률(%)	65 이상																										
	1/2 압축시 돌출량 (mm)	10 이하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3.3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	3.3.1 본 시방서 7-4절 3.3에 따른다. 3.3.2 거푸집 제거후 폼타이 구멍은 통로암거인 경우 뒷채움부인 통로의 외부구멍을 메우고, 수로암거인 경우 내·외부의 구멍을 모두 무수축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3.3.3 음각 무늬거푸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음각깊이 만큼 구조물의 철근 피복이 감소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	3.3.1 본 시방서 6-3-3절에 따른다. 3.3.2 거푸집 제거후 폼타이 구멍은 통로암거인 경우 뒷채움부인 통로의 외부구멍을 메우고, 수로암거인 경우 내·외부의 구멍을 모두 무수축 <u>모르타르</u> 로 메워야 한다. 3.3.3 음각 문형거푸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음각깊이 만큼 구조물의 철근 피복이 감소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o 외래어 표기방식 변경 모르터⇒모르타르	수정		
3.4 철근 콘크리트	3.4.1 암거 본체의 철근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7-5절 및 7-7절에 따른다. 3.4.2 벽체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에는 암거의 바닥 콘크리트가 굳어진 후 시공하여야 하며, 바닥에 흩어진 톱밥이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4.3 암거의 높이가 1.2m 이하인 경우에는 측벽과 상부 슬래브의 콘크리트 치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4.4 암거의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측벽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치기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측벽 콘크리트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와의 결합을 위해 맞물림 철근을 남겨두어야 하며 측벽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5 암거가 사이폰(Syphon) 구조일 경우에는 수밀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철근 콘크리트	3.4.1 암거 본체의 철근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6-4절 및 6-5절에 따른다. 3.4.2 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암거의 바닥 슬래브가 굳어진 후 시공하여야 하며, 바닥에 흩어진 톱밥이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3.4.3 암거의 높이가 1.2m 이하인 경우에는 측벽과 상부 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3.4.4 암거의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측벽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측벽 콘크리트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와의 결합을 위해 맞물림 철근을 남겨두어야 하며 측벽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5 암거가 사이폰(Syphon) 구조일 경우에는 수밀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3.4.6 <u>날개벽은 가능하면 암거본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한다.</u>	o 날개벽 콘크리트 타설 시기제시	추 가		
3.5 시공이음	3.5.1 암거 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특별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2 시공이음은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수판은 구체 단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5.3 시공이음부는 팽창줄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5.4 <u>이음부의 실런트 채움은 누수방지 및 미관을 고려하여</u> 통로암거인 경우 암거 이음부의 내부를 실런트로 메우고 수로암거인 경우 암거 이음부의 내·외부를 실런트로 메워야 한다.	3.5 시공이음	3.5.1 암거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각별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2 시공이음은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수판은 구체 단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5.3 시공이음부는 팽창줄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5.4 누수방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이음부의 밀폐재(sealant)채움은 통로 및 수로암거 이음부의 내·외부를 실런트로 메워야 한다.		수 정		
3.6 동바리 및 거푸집 떼어 내기	본 시방서 7-4절 3.3에 따른다.	3.6 동바리 및 거푸집 떼어 내기	3.6.1 본 시방서 6-4절 3-13에 따른다.		수 정		
3.7 되메우기 및 뒷채움	암거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시공은 본 시방서 4-7절에 따른다.	3.7 되메우기 및 뒷채움	3.7.1 본 시방서 3-7절에 따른다. 3.7.2 측벽과 상부슬래브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는 박스암거의 양벽을 뒷채움 하여서는 안 되며, 상부슬래브가 포장 마무리면으로부터 3.5m 이내에 있을 경우는 양질의 막자갈 또는 승인된 조립재료를 사용하여 암거 측벽부 뒤에 켜기모양으로 층층이 퍼깔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7.3 암거 뒷채움의 시공은 본체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한쪽이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여야 할	o 암거 되메우기 및 뒷채움 시기와 시공방법 제시 (설계실무 자료집 2000. 12 , P 113)	추 가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3.8 방수처리 3.8.1 암거 구체에 대한 방수처리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시공자는 암거 구체의 콘크리트 표면 상태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8.3 방수처리 후 장기간 일광의 노출로 인하여 방수재료가 방수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시공사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8.4 영업소 통로박스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트 방수를 할 수 있다. 3.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3.9.1 암거의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는 <u>설계도서에 따라</u>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켄틸레버형식의 날개벽인 경우에는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9.2 날개벽은 암거 구체와 동시에 콘크리트 치기를 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분리시공을 할 수도 있다. 3.9.3 날개벽에는 배면의 배수를 위하여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 공의 높이는 날개벽의 비탈면 이하의 높이로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3.9.4 수로암거인 경우에는 <u>유수에 의한 세굴방지를 위하여 유입·유출구 에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u> 3.10 접속 보강슬래브 3.10.1 시공일반 (1) 흙쌓기의 두께가 얇은 암거인 경우에는 암거 구체의 접속부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Approach slab)를 보강하여 암거 구체와 흙쌓기의 접속부에 생기는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공은 본 시방서 11-1절 3.11에 따른다. 3.10.2 접속 보강슬래브의 구조 (1) 보강슬래브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보강슬래브의 폭은 <u>차선평</u> 및 내·외측 양측대를 포함하는 폭으로 한다. 날개벽 등에 접할 경우에는 이음재를 넣어서 가장자리를 절단 하여야 한다. (3) 암거의 배면에는 보강슬래브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받침대에는 <u>고무받침과 앵커볼트(Anchor bolt)를 설치한다.</u> (4) 보강슬래브와 받침대, 암거의 측벽등의 사이에는 이음재를 삽입하여 야 하며, 보강슬래브의 흙쌓기 측에는 특별한 받침 구조를 설치하여 야 한다.	<u>때는 실내 시험결과 충분한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u> 3.8 방수처리 3.8.1 암거 구체에 대한 방수처리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시공자는 암거 구체의 콘크리트 표면 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 측을 받은 후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8.3 방수처리 후 장기간 일광의 노출로 인하여 방수재료가 방수기능 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시공사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3.9.1 암거의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는 <u>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u> 시 공하여야 하며, 특히 켄틸레버형식의 날개벽인 경우에는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2 날개벽은 암거 구체와 동시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분리시공을 할 수도 있다. 3.9.3 날개벽에는 배면의 배수를 위하여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공 의 높이는 날개벽의 비탈면 이하의 높이로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3.9.4 수로암거인 경우에는 <u>유출입부의 유속이</u> <u>2.5m/sec <V≤4.0m/sec 시 : 배수구조물 높이의 3배이상</u><u>이 되도록 콘크리트 피복</u> <u>4.0m/sec <V≤6.0m/sec 시 : 배수구조물 높이의 3배이상</u><u>이 되도록</u> <u>록하고 감쇄공 설치</u> <u>6.0m/sec <V 시 : 침전조 설치 등의 수로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u> <u>한다.</u> 3.10 접속 보강슬래브 3.10.1 시공일반 (1) 흙쌓기의 두께가 얇은 암거인 경우에는 암거 구체의 접속부에 철근 콘크리 트 슬래브(Approach slab)를 보강하여 암거 구체와 흙쌓기의 접속부에 생기 는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공은 본 시방서 10-1절 3.11에 따른다. 3.10.2 접속 보강슬래브의 구조 (1) 보강슬래브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보강슬래브의 폭은 <u>차로폭</u> 및 내·외측 양측대를 포함하는 폭으로 한다. 날개벽 등에 접할 경우에는 이음재를 넣어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여야 한다. (3) 암거의 배면에는 보강슬래브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받침대에는 <u>다웰바를 설치한다.</u> (4) 보강슬래브와 받침대, 암거의 측벽 등의 사이에는 이음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보강슬래브의 흙쌓기 측에는 특별한 받침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o 수로보호를 위한 유속기준을 정함 o 용어변경 : 차선평⇒차로폭 o 표준내용과 동일	추 가 수 정 수 정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3.10.3 접속 보강슬래브의 시공 (1) 보강슬래브를 설치하는 장소는 공사용 차량 등에 의한 자연다짐을 실시하여 뒷채움부의 다짐과 안정을 꾀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속 보강슬래브의 기초바닥은 바닥고르기를 실시하고 슬래브 경사와 동일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은 이 시방서 6-4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11 기존암거의 확장 3.11.1 기존암거 이음부의 깨기는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1.2 기존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기존 콘크리트면을 수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 잔재등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1.3 기존 철근과의 겹이음 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접 등으로 겹이음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11.4 콘크리트 이음면은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여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11.5 이음부의 외벽에는 시트 방수지 등을 시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6 거푸집은 기존 콘크리트면과 밀착하도록 하여 신·구 콘크리트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12 버팀보(Strut) <u>문형암거의 버팀보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암거 본체 시공 후 되메우기 및 뒷채움 시공전에 행하고 부당한 응력이 작용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야 한다.</u> 3.13 신축이음 <u>콘크리트 온도 신축이음은 설치암거의 규모에 따라 콘크리트 온도신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이음재료는 본 시방서 5-2-1절 2.2에 따르고 시공은 5-2-1절 3.5에 따른다.</u> 3.14 편절 · 편성구간 <u>편절·편성구간에 위치한 암거는 기초지반의 지지력 차이로 인한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3-9절에 따라 기초재를 부설하고,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u>	o 암거형태, 설치위치, 암거의 규격 관리 기준 신설 o 암거형태, 설치위치, 암거의 규격 관리 기준 신설 o 암거형태, 설치위치, 암거의 규격 관리 기준 신설	추 가 추 가 추 가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3.15 기존 암거의 폐쇄 및 철거 3.15.1 확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내하력 부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는 5종 콘크리트를 채워서 폐쇄하여야 한다. 3.15.2 기존 암거 철거 시에는 3-3절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철거 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유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16 콘크리트 암거의 규격관리 표 5-2-3 콘크리트 암거 규격관리 기준 <table><tr><th>항</th><th>목</th><th>규격치(mm)</th><th>측 정 기 준</th><th>비 고</th></tr><tr><td>기</td><td>준</td><td>고</td><td>±30</td><td rowspan="6">양단시공이음개소 마다</td></tr><tr><td>두께</td><td>t1,t2,t3,t4</td><td>-20</td></tr><tr><td>폭</td><td>a1</td><td>-30</td></tr><tr><td>높 이</td><td>h1</td><td>±30</td></tr><tr><td rowspan="2">길이</td><td>L < 20m</td><td>-50</td></tr><tr><td>L > 20m</td><td>-100</td></tr></table>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	준	고	±30	양단시공이음개소 마다	두께	t1,t2,t3,t4	-20	폭	a1	-30	높 이	h1	±30	길이	L < 20m	-50	L > 20m	-100	o 암거형태, 설치위치, 암거의 규격관리 기준 신설 o 암거형태, 설치위치, 암거의 규격관리 기준 신설	추 가 추 가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	준	고	±30	양단시공이음개소 마다																									
두께	t1,t2,t3,t4	-20																											
폭	a1	-30																											
높 이	h1	±30																											
길이	L < 20m	-50																											
	L > 20m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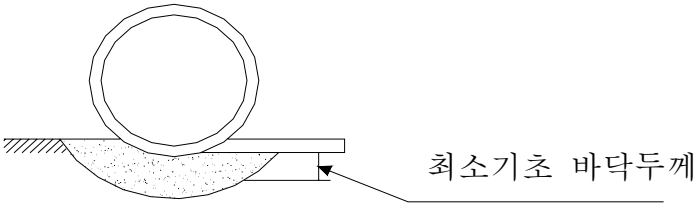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표 6-1 현장 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구 분		호 칭 지 림 (mm)				비 고									
		600	800	1,000	1,200										
균열강도 (kgf/m ²)		3,000	3,600	4,200	4,600										
파괴강도 (kgf/m ²)		6,000	7,200	8,400	9,200										
표 6-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 분	규격(mm)	인장강도 (kgf/mm ²)	선지름 허용차	시험방법											
보통철선	6 9	390 - 930 320 - 880	± 0.13	KS B 0802											

표 5-2-4 현장 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구 분		호칭지름(mm)				비 고									
		600	800	1,000	1,200										
균열강도	중력단위(kgf/m ²)	3,000	3,600	4,200	4,600										
	SI단위(kN/m ²)	29	35	41	45										
파괴강도	중력단위(kgf/m ²)	6,000	7,200	8,400	9,600										
	SI단위(kN/m ²)	59	71	82	94										
표 5-2-5 현장 제작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 분	규격 (mm)	인장강도		선지름 허용차	시험방법										
		SI단위(kN/mm ²)	중력단위(kgf/mm ²)												
보통철선	6	5.3이상	540이상	±0.13	KS B 0802										
	9	5.3이상	540이상												
2.3 파형강관															
2.3.1 재질															
(1) 파형강관은 KS D 3506에 의한 열연 용융아연도금 강관으로 만든다.															
표 5-2-6 용융아연도금 강관의 요구조건															
기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P (%)	S (%)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										
SGHC	-	-	205(N/mm ²) 이상	270(N/mm ²) 이상	-										
(2) 용융아연도금을 한 강관의 아연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표 5-2-7 아연부착량 기준															
아연 부착량의 종류				3점기준 최소 부착량(양면 기준, gf/m ²)											
Z600				600											
2.3.2 형상 및 치수(SCP 1RS)															
(1) 형상															
그림 5-2-1 SCP 1RS의 규격															

o SI 단위계 병용표시		수 정
o 종 · 횡방향 배수관 공사에 파형강관이 들어나는 추세에 따라 전문 시방서의 추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추 가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2) 단면치수 기호 표 5-2-8 SCP 1RS의 호칭별 판두께 <table><tr><th rowspan="2">기 호</th><th rowspan="2">호칭지름 D(mm)</th><th colspan="4">판두께 (mm)</th><th rowspan="2">길이L(mm)</th></tr><tr><th>1.6</th><th>2.0</th><th>2.7</th><th>3.2</th></tr><tr><td rowspan="10">SCP 1RS</td><td>400</td><td>0</td><td>0</td><td>-</td><td>-</td><td rowspan="10">4,000부터 6,000까지의 지정된 길이</td></tr><tr><td>450</td><td>0</td><td>0</td><td>-</td><td>-</td></tr><tr><td>600</td><td>0</td><td>0</td><td>0</td><td>-</td></tr><tr><td>800</td><td>0</td><td>0</td><td>0</td><td>-</td></tr><tr><td>1,000</td><td>0</td><td>0</td><td>0</td><td>0</td></tr><tr><td>1,200</td><td>0</td><td>0</td><td>0</td><td>0</td></tr><tr><td>1,350</td><td>0</td><td>0</td><td>0</td><td>0</td></tr><tr><td>1,500</td><td>0</td><td>0</td><td>0</td><td>0</td></tr><tr><td>1,650</td><td>0</td><td>0</td><td>0</td><td>0</td></tr><tr><td>1,800</td><td>0</td><td>0</td><td>0</td><td>0</td></tr></table> 그림 5-2-2 SCR 1RS의 형상 표 5-2-9 SCR 1RS의 규격 <table><tr><th rowspan="2">기 호</th><th colspan="3">치 수</th></tr><tr><th>파의피치 P(mm)</th><th>파의깊이H(mm)</th><th>파의 굽힘반지름 r(mm)</th></tr><tr><td>SCP 1RS</td><td>68.0</td><td>13.0</td><td>17.5</td></tr></table> (3) 치수 허용차 기호 표 5-2-10 SCR 1RS의 허용 오차 (단위: mm) <table><tr><th rowspan="2">기 호</th><th colspan="6">치수 허용차</th></tr><tr><th>파의 피치 P</th><th>파의 깊이 H</th><th>강관의 길이 L</th><th>호칭 지름 D</th><th>축방향 휨</th><th>커플링 밴드의 나비 W</th></tr><tr><td>SCP 1RS</td><td>±2.0</td><td>±2.0</td><td>지정길이의 +40 지정길이의 -10</td><td>1000미만 ±10 1000 이상 ±1%</td><td>길이의 ±0.3% 이하</td><td>±5.0</td></tr></table>				기 호	호칭지름 D(mm)	판두께 (mm)				길이L(mm)	1.6	2.0	2.7	3.2	SCP 1RS	400	0	0	-	-	4,000부터 6,000까지의 지정된 길이	450	0	0	-	-	600	0	0	0	-	800	0	0	0	-	1,000	0	0	0	0	1,200	0	0	0	0	1,350	0	0	0	0	1,500	0	0	0	0	1,650	0	0	0	0	1,800	0	0	0	0	기 호	치 수			파의피치 P(mm)	파의깊이H(mm)	파의 굽힘반지름 r(mm)	SCP 1RS	68.0	13.0	17.5	기 호	치수 허용차						파의 피치 P	파의 깊이 H	강관의 길이 L	호칭 지름 D	축방향 휨	커플링 밴드의 나비 W	SCP 1RS	±2.0	±2.0	지정길이의 +40 지정길이의 -10	1000미만 ±10 1000 이상 ±1%	길이의 ±0.3% 이하	±5.0		
기 호	호칭지름 D(mm)	판두께 (mm)						길이L(mm)																																																																																													
		1.6	2.0	2.7	3.2																																																																																																
SCP 1RS	400	0	0	-	-	4,000부터 6,000까지의 지정된 길이																																																																																															
	450	0	0	-	-																																																																																																
	600	0	0	0	-																																																																																																
	800	0	0	0	-																																																																																																
	1,000	0	0	0	0																																																																																																
	1,200	0	0	0	0																																																																																																
	1,350	0	0	0	0																																																																																																
	1,500	0	0	0	0																																																																																																
	1,650	0	0	0	0																																																																																																
	1,800	0	0	0	0																																																																																																
기 호	치 수																																																																																																				
	파의피치 P(mm)	파의깊이H(mm)	파의 굽힘반지름 r(mm)																																																																																																		
SCP 1RS	68.0	13.0	17.5																																																																																																		
기 호	치수 허용차																																																																																																				
	파의 피치 P	파의 깊이 H	강관의 길이 L	호칭 지름 D	축방향 휨	커플링 밴드의 나비 W																																																																																															
SCP 1RS	±2.0	±2.0	지정길이의 +40 지정길이의 -10	1000미만 ±10 1000 이상 ±1%	길이의 ±0.3% 이하	±5.0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4) 커플링 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그림 5-2-3 커플링 밴드 형상																																																																														
		표 5-2-11 커플링 밴드 규격																																																																														
		<table><tr><th rowspan="2">기 호</th><th rowspan="2">호칭지름 D(mm)</th><th colspan="2">D-1</th><th colspan="2">D-2</th><th colspan="2">S-1</th><th colspan="2">S-2</th></tr><tr><th>관두께t (mm)</th><th>나비W (mm)</th><th>관두께t (mm)</th><th>나비W (mm)</th><th>관두께t (mm)</th><th>나비W (mm)</th><th>관두께t (mm)</th><th>나비W (mm)</th></tr><tr><td rowspan="6">SCP IRS</td><td>300</td><td rowspan="2">1.6</td><td rowspan="2">270</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1.6,2.0</td><td>410</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tr><td>400</td><td rowspan="2">1.6,2.0, 2.7</td><td colspan="2" rowspan="2">410</td></tr><tr><td>450</td></tr><tr><td>600</td><td rowspan="2">1.6</td><td rowspan="2">270</td><td rowspan="3">2.0</td><td rowspan="3">410</td><td rowspan="3">1.6,2.0, 2.7,3.2</td><td rowspan="3">410</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tr><td>800</td></tr><tr><td>100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2.7</td><td rowspan="2">41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3.2</td><td rowspan="2">410</td></tr><tr><td>1200</td></tr><tr><td>135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2.7</td><td rowspan="2">41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3.2</td><td rowspan="2">410</td></tr><tr><td>1500</td></tr><tr><td>165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2.7</td><td rowspan="2">41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3.2</td><td rowspan="2">410</td></tr><tr><td>1800</td></tr></table>		기 호	호칭지름 D(mm)	D-1		D-2		S-1		S-2		관두께t (mm)	나비W (mm)	관두께t (mm)	나비W (mm)	관두께t (mm)	나비W (mm)	관두께t (mm)	나비W (mm)	SCP IRS	300	1.6	270	-	-	1.6,2.0	410	-	-	400	1.6,2.0, 2.7	410		450	600	1.6	270	2.0	410	1.6,2.0, 2.7,3.2	410	-	-	800	1000	-	-	2.7	410			3.2	410	1200	1350	-	-	2.7	410			3.2	410	1500	1650	-	-	2.7	410			3.2	410	1800				
기 호	호칭지름 D(mm)	D-1				D-2		S-1		S-2																																																																						
		관두께t (mm)	나비W (mm)	관두께t (mm)	나비W (mm)	관두께t (mm)	나비W (mm)	관두께t (mm)	나비W (mm)																																																																							
SCP IRS	300	1.6	270	-	-	1.6,2.0	410	-	-																																																																							
	400					1.6,2.0, 2.7	410																																																																									
	450																																																																															
	600	1.6	270	2.0	410	1.6,2.0, 2.7,3.2	410	-	-																																																																							
	800																																																																															
	1000	-	-							2.7	410			3.2	410																																																																	
1200																																																																																
1350	-	-	2.7	410			3.2	410																																																																								
1500																																																																																
1650	-	-	2.7	410			3.2	410																																																																								
1800																																																																																
3. 시 공		3. 시 공																																																																														
		3.1 시공시 유의사항																																																																														
		3.1.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o 내용추가		추 가																																																																										
		3.1.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1.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3.1.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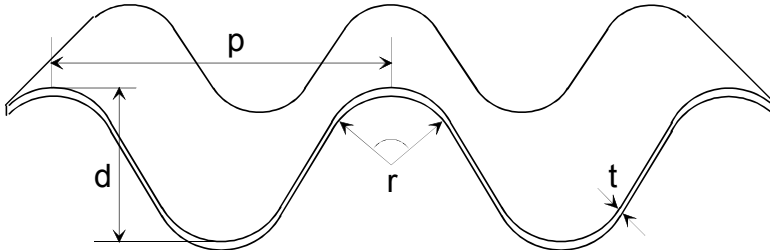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3.3.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친다. 3.3.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압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3.6 파형강관은 가요성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 5-2-5와 같이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보통지반 그림 5-2-5 지반에 따른 기초폭 표 5-2-13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table><tr><th colspan="2">두께 및 폭</th><th colspan="3">기초의 최소두께(H)</th></tr><tr><th>기초의 지질</th><th>관경</th><th>900mm 이하</th><th>900~2000mm</th><th>2,000mm 이상</th></tr><tr><td>보통지반</td><td></td><td>20cm</td><td>30cm</td><td>0.2D</td></tr><tr><td>암지반</td><td></td><td colspan="3">20cm 단, 쌓기 높이가 5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m에 대하여 4cm씩 증가시킴</td></tr><tr><td>연약지반</td><td></td><td>50cm</td><td>0.4D와 50cm중에서 큰 값</td><td>0.3D(최대 1m까지)</td></tr></table>	두께 및 폭		기초의 최소두께(H)			기초의 지질	관경	900mm 이하	900~2000mm	2,000mm 이상	보통지반		20cm	30cm	0.2D	암지반		20cm 단, 쌓기 높이가 5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m에 대하여 4cm씩 증가시킴			연약지반		50cm	0.4D와 50cm중에서 큰 값	0.3D(최대 1m까지)			
두께 및 폭		기초의 최소두께(H)																													
기초의 지질	관경	900mm 이하	900~2000mm	2,000mm 이상																											
보통지반		20cm	30cm	0.2D																											
암지반		20cm 단, 쌓기 높이가 5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m에 대하여 4cm씩 증가시킴																													
연약지반		50cm	0.4D와 50cm중에서 큰 값	0.3D(최대 1m까지)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3.4 이동 및 설치(철근콘크리트 V.R관) 3.4.1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4.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4.3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3.4.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3.4.5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3.4.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 상부는 30cm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4.7 관위에 불도자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o 중 · 횡방향 배수관 공사에 진동 및 전압(철근콘크리트 V.R관)관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전문 시방서의 추가 필요	추	가
	3.3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 3.3.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코자 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3.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3.3.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로울링(Rolling) 장비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3.3.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3.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3.5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 3.5.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2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코자 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3.5.3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3.5.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rolling) 장비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3.5.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5.6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3.4 관부설 3.4.1 모든 관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구배에 맞도록 하여 하류측에서 상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관이 기초바닥과는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2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부분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플렌지(Flange)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3.6 관부설 3.6.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플랜지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수	정
							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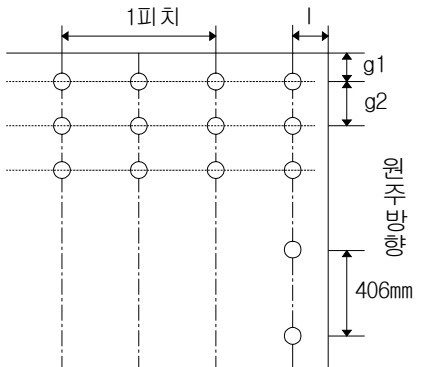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3.4.3 모든 배수관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3.4.4 관의 선형과 구배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Ba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관의 이음 3.5.1 시공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 배합비가 1:2 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5.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3.6.1 관부설이 완료되면 <u>시공자는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u> 3.6.2 <u>시공자는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u> 3.6.3 <u>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 4-7절에 따른다.</u>	3.6.3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6.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깨끗이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3.6.5 파형강관 시공부 기초지반이 잔류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잔류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계하여야 한다. 3.7 관의 이음 3.7.1- 시공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7.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8 되메우기, 뒷채움 및 흙쌓기 3.8.1 관부설이 완료되면 <u>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하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u> 3.8.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8.3 파형강관은 가급적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20cm이하로 하고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3.8.4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3.8.5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 3-7절 3.8~9에 따른다. 3.8.6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cm 이하로 한다. 3.8.7 흙쌓기 및 뒷채움 재료는 입상재료로 한다 그림 5-2-6 흙쌓기와 뒷채움 기준		수정 및 추가 수 정 수 정 수정 및 추가 추 가 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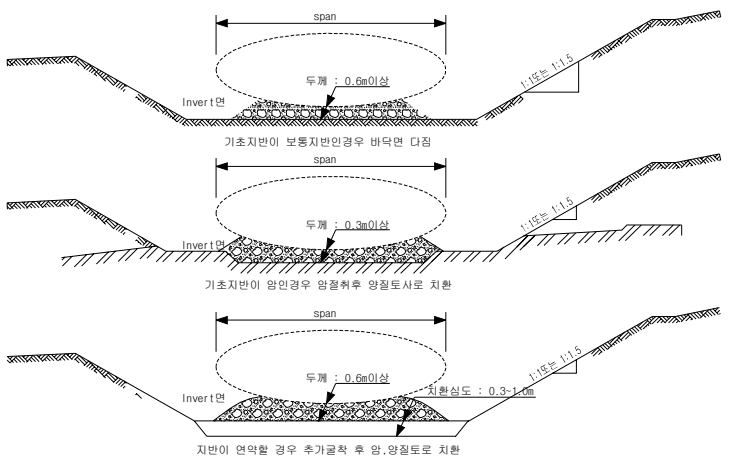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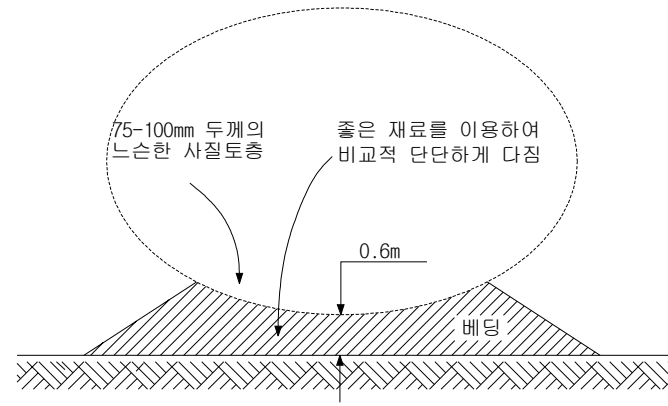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u>3.7 배수관 유입·유출구</u> 3.7.1 용배수관의 유입·유출구는 수류의 유입·유출이 지형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세굴방지를 위해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7.2 측구와 집수정 또는 <u>집수거</u>가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u>3.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u> 3.9.1 날개벽의 시공은 본시방서 5-2-1절 3.9에 따른다. 3.9.2 유입, 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9.3 측구와 집수정 또는 <u>배수정</u>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9.4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u>3.10 배수관 규격관리</u> 표 5-2-14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table><tr><th>항 목</th><th>규격치(mm)</th><th>측 정 기 준</th><th>비 고</th></tr><tr><td>기준고</td><td>±30</td><td rowspan="5">·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td><td rowspan="5"></td></tr><tr><td>폭 a</td><td>-50</td></tr><tr><td>높이 h1</td><td>-30</td></tr><tr><td>두께 a1, a2</td><td>-20</td></tr><tr><td>연장 L</td><td>-200</td></tr></table>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	-50	높이 h1	-30	두께 a1, a2	-20	연장 L	-200	o 공사시 배수관 규격관리의 구체적인 기준제시 필요에 따라 전문시방서의 추가 필요	수 정 추 가 추 가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	-50																		
높이 h1	-30																		
두께 a1, a2	-20																		
연장 L	-200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5-2-3 파형강판 압거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용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통로 및 수로압거, 소교량, 임시 가시설 및 방음터널 등의 파형강판구조물 시공에 적용한다. 일반 강재 대신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강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 기준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KS D 3590 파형 강판 및 파형 섹션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파형강판(corrugated steel plate) : 일정 크기의 구조용 강판재를 정해진 규격의 주름 모양으로 성형한 금속판 1.3.2 파형강판구조물(soil-steel structures) : 파형강판을 볼트로 연결하여 단면을 형성한 후 주변과 상부를 구조적 뒷채움재로 다짐하여 흙-구조물 상호작용으로부터 외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 1.3.3 단면 폭(span, S)과 높이(rise, R) : 파형강판구조물 단면의 최대 폭과 높이 (단면형상별 폭과 높이는 그림 5-2-10 참조) 1.3.4 토피(soil cover) : 파형강판구조물 정점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흙채움부 1.3.5 최소토피두께(minimum depth of soil cover) : 파형강판구조물의 안정적 거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높이의 토피고 1.3.6 구조적 뒷채움(engineered backfill) : 파형강판구조물의 연성거동을 보장하도록 구조물 주변의 일정 범위에 양질의 흙, 또는 기타 채움재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다짐 성토하는 것 1.3.7 베딩(bedding) : 폐합 단면의 파형강판구조물과 기초 지반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양질의 다짐 토사층(베드)을 형성하는 것 1.3.8 아칭 (arching) : 파형강판 구조물 주변 토체 간의 상대적 변위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력이 상호 전이되는 현상 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콘크리트 통로/수로 박스를 파형강판으로 구조물 대체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전문시방서의 추가 필요성 및 기술의 10410-30106('02.7.23) 및 기술의 10410-30190('02.12.23)과 관련하여 통로, 수로 압거에 대한 파형강판압거 시행방안에 의거 추가	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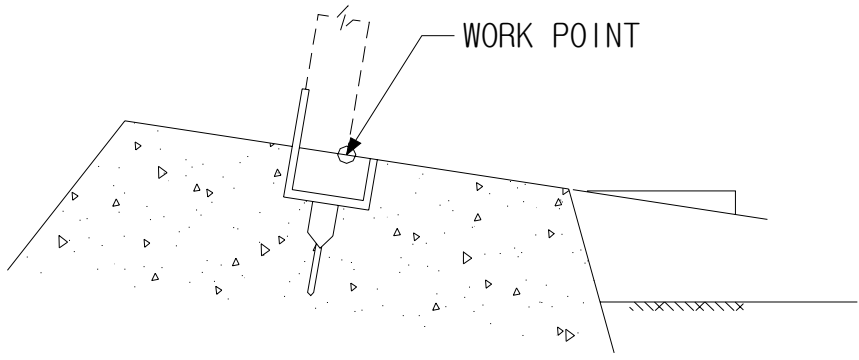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2. 재료 2.1 강판 2.1.1 파형강판 소재는 표 5-2-15의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 사용해야 하며,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기간 동안 임시 구조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생략할 수 있다. 표 5-2-15 파형강판 원소재의 요구조건 (KS D 3503,3506) <table><tr><th rowspan="3">구 분</th><th rowspan="3">재료기호 (KS D3505)</th><th colspan="3">화학적 성분</th><th colspan="4">기계적 특성</th></tr><tr><th rowspan="2">P(%)</th><th rowspan="2">S (%)</th><th rowspan="2">아연부착량 (g/m²)²⁾</th><th rowspan="2">항복강도 (MPa)³⁾</th><th rowspan="2">인장강도 (MPa)</th><th colspan="2">연신율(%)</th></tr><tr><th>t≤5</th><th>5<t≤16</th></tr><tr><td>표준형</td><td>SS400</td><td>≤ 0.050</td><td>≤ 0.050</td><td>900 ≤</td><td>245 ≤</td><td>400 ≤</td><td>21 ≤</td><td>17 ≤</td></tr><tr><td>대골형</td><td>SS490¹⁾</td><td>≤ 0.050</td><td>≤ 0.050</td><td>900 ≤</td><td>285 ≤</td><td>490 ≤</td><td>19 ≤</td><td>15 ≤</td></tr></table> 주 1) ASTM A1018의 Grade40(항복강도 275MPa 이상, 인장강도 380MPa 이상) 사용 가능 2) 강판 양면 기준 3) 설계시 강도는 이 값을 적용함(별도 시험결과가 있을 경우는 시험값을 적용 할 수 있음) 2.1.2 파형의 규격은 표 5-2-16과 같이 “표준형”, “대골형”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두께별 단면 특성값은 표 5-2-17, 5-2-18과 같다. 표 5-2-16 파형의 규격 (corrugation) <table><tr><th>종 류</th><th>두께, t</th><th>골의 피치, p</th><th>골의 깊이, d</th><th>굽힘반지름, r</th></tr><tr><td>표준형</td><td rowspan="2">1.6~7.0mm</td><td>150mm</td><td>50mm</td><td>28mm</td></tr><tr><td>대골형</td><td>380mm</td><td>140mm</td><td>76mm</td></tr></table> 주 1) 강판의 두께는 도금 전을 기준으로 함 2) 피치와 깊이의 허용오차는 ±3mm 			구 분	재료기호 (KS D3505)	화학적 성분			기계적 특성				P(%)	S (%)	아연부착량 (g/m ²) ²⁾	항복강도 (MPa) ³⁾	인장강도 (MPa)	연신율(%)		t≤5	5<t≤16	표준형	SS400	≤ 0.050	≤ 0.050	900 ≤	245 ≤	400 ≤	21 ≤	17 ≤	대골형	SS490 ¹⁾	≤ 0.050	≤ 0.050	900 ≤	285 ≤	490 ≤	19 ≤	15 ≤	종 류	두께, t	골의 피치, p	골의 깊이, d	굽힘반지름, r	표준형	1.6~7.0mm	150mm	50mm	28mm	대골형	380mm	140mm	76mm			
구 분	재료기호 (KS D3505)	화학적 성분					기계적 특성																																																		
		P(%)	S (%)	아연부착량 (g/m ²) ²⁾			항복강도 (MPa) ³⁾	인장강도 (MPa)	연신율(%)																																																
					t≤5	5<t≤16																																																			
표준형	SS400	≤ 0.050	≤ 0.050	900 ≤	245 ≤	400 ≤	21 ≤	17 ≤																																																	
대골형	SS490 ¹⁾	≤ 0.050	≤ 0.050	900 ≤	285 ≤	490 ≤	19 ≤	15 ≤																																																	
종 류	두께, t	골의 피치, p	골의 깊이, d	굽힘반지름, r																																																					
표준형	1.6~7.0mm	150mm	50mm	28mm																																																					
대골형		380mm	140mm	76mm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표 5-2-17 표준형 강판의 두께별 단면제원 <table><tr><th>강판두께 t(mm)</th><th>단면적 As(cm²/m)</th><th>단면계수 Ss(cm³/m)</th><th>소성단면계수 Z(cm⁴/m)</th><th>단면2차모멘트 I(cm⁴/m)</th></tr><tr><td>2.70</td><td>33.48</td><td>36.96</td><td>51.35</td><td>97.40</td></tr><tr><td>3.20</td><td>39.69</td><td>43.57</td><td>60.99</td><td>115.90</td></tr><tr><td>4.00</td><td>49.65</td><td>50.42</td><td>76.50</td><td>145.87</td></tr><tr><td>4.50</td><td>55.88</td><td>60.49</td><td>86.25</td><td>164.84</td></tr><tr><td>5.00</td><td>62.13</td><td>67.21</td><td>96.05</td><td>184.84</td></tr><tr><td>5.30</td><td>65.86</td><td>70.75</td><td>101.95</td><td>195.62</td></tr><tr><td>6.00</td><td>74.60</td><td>79.64</td><td>115.78</td><td>223.01</td></tr><tr><td>7.00</td><td>87.10</td><td>92.26</td><td>135.70</td><td>262.93</td></tr></table> 표 5-2-18 대골형 강판의 두께별 단면제원 <table><tr><th>강판두께 t(mm)</th><th>단면적 A(cm²/m)</th><th>단면계수 S(cm³/m)</th><th>소성단면계수 Z(cm⁴/m)</th><th>단면2차모멘트 I(cm⁴/m)</th></tr><tr><td>3.42</td><td>47.83</td><td>152.73</td><td>212.67</td><td>1171.16</td></tr><tr><td>4.18</td><td>58.46</td><td>186.05</td><td>260.15</td><td>1433.39</td></tr><tr><td>4.67</td><td>65.36</td><td>207.54</td><td>291.03</td><td>1603.90</td></tr><tr><td>5.45</td><td>76.28</td><td>241.38</td><td>339.93</td><td>1874.33</td></tr><tr><td>6.23</td><td>87.16</td><td>274.87</td><td>388.77</td><td>2144.59</td></tr><tr><td>7.01</td><td>98.08</td><td>308.24</td><td>437.85</td><td>2416.46</td></tr></table> 2.1.3 표준형 및 대골형 강판의 상호 겹침값과 볼트구멍 사이 간격은 표 5-2-19, 5-2-20과 같다. 표 5-2-19 강판의 볼트구멍 사이 간격(표준형 강판) <table><tr><th rowspan="2">축 방향 겹침값 1</th><th colspan="2">원둘레 방향 겹침값</th></tr><tr><th>g₁</th><th>g₂</th></tr><tr><td>50mm</td><td>35mm</td><td>50mm</td></tr></table> ○ 기본 볼트구멍 위치 ● 추가 볼트구멍 위치(두꺼운 판의 경우) ※ 숫자의 의미 ①=2볼트/피치, ②=3볼트/피치, ③=4볼트/피치		강판두께 t(mm)	단면적 As(cm ² /m)	단면계수 Ss(cm ³ /m)	소성단면계수 Z(cm ⁴ /m)	단면2차모멘트 I(cm ⁴ /m)	2.70	33.48	36.96	51.35	97.40	3.20	39.69	43.57	60.99	115.90	4.00	49.65	50.42	76.50	145.87	4.50	55.88	60.49	86.25	164.84	5.00	62.13	67.21	96.05	184.84	5.30	65.86	70.75	101.95	195.62	6.00	74.60	79.64	115.78	223.01	7.00	87.10	92.26	135.70	262.93	강판두께 t(mm)	단면적 A(cm ² /m)	단면계수 S(cm ³ /m)	소성단면계수 Z(cm ⁴ /m)	단면2차모멘트 I(cm ⁴ /m)	3.42	47.83	152.73	212.67	1171.16	4.18	58.46	186.05	260.15	1433.39	4.67	65.36	207.54	291.03	1603.90	5.45	76.28	241.38	339.93	1874.33	6.23	87.16	274.87	388.77	2144.59	7.01	98.08	308.24	437.85	2416.46	축 방향 겹침값 1	원둘레 방향 겹침값		g ₁	g ₂	50mm	35mm	50mm		
강판두께 t(mm)	단면적 As(cm ² /m)	단면계수 Ss(cm ³ /m)	소성단면계수 Z(cm ⁴ /m)	단면2차모멘트 I(cm ⁴ /m)																																																																																									
2.70	33.48	36.96	51.35	97.40																																																																																									
3.20	39.69	43.57	60.99	115.90																																																																																									
4.00	49.65	50.42	76.50	145.87																																																																																									
4.50	55.88	60.49	86.25	164.84																																																																																									
5.00	62.13	67.21	96.05	184.84																																																																																									
5.30	65.86	70.75	101.95	195.62																																																																																									
6.00	74.60	79.64	115.78	223.01																																																																																									
7.00	87.10	92.26	135.70	262.93																																																																																									
강판두께 t(mm)	단면적 A(cm ² /m)	단면계수 S(cm ³ /m)	소성단면계수 Z(cm ⁴ /m)	단면2차모멘트 I(cm ⁴ /m)																																																																																									
3.42	47.83	152.73	212.67	1171.16																																																																																									
4.18	58.46	186.05	260.15	1433.39																																																																																									
4.67	65.36	207.54	291.03	1603.90																																																																																									
5.45	76.28	241.38	339.93	1874.33																																																																																									
6.23	87.16	274.87	388.77	2144.59																																																																																									
7.01	98.08	308.24	437.85	2416.46																																																																																									
축 방향 겹침값 1	원둘레 방향 겹침값																																																																																												
	g ₁	g ₂																																																																																											
50mm	35mm	50mm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표 5-2-20 강판의 볼트구멍 간격(대골형 강판) <table><tr><td rowspan="2">축 방향 겹침값 l</td><td colspan="2">원둘레 방향 겹침값</td></tr><tr><td>g_1</td><td>g_2</td></tr><tr><td>38mm</td><td>38mm</td><td>76mm</td></tr></table> ○ 기본 볼트구멍 위치 (6볼트/피치) 			축 방향 겹침값 l	원둘레 방향 겹침값		g_1	g_2	38mm	38mm	76mm			
축 방향 겹침값 l	원둘레 방향 겹침값														
	g_1	g_2													
38mm	38mm	76mm													
		2.1.4 강판은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반드시 최종 형태로 성형하고, 볼트구멍을 편칭한 후에 용융 아연도금하여야 하며, 도금 후에는 임의 절단하거나 형상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2.2 볼트 및 기타 2.2.1 강판 조립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는 표준 규격에서 정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와 연결시키기 위한 앵커볼트, 베이스채널은 각각 볼트 및 강판의 재료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2.2 단기간 임시구조물로 사용할 경우 외에는 상기 금속 부속 자재는 반드시 아연도금되거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기초 및 뒷채움 파형강판구조물은 강판과 주변 지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조적 성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구조물 기초부 및 뒷채움부의 재료 선정과 시공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3.1.1 기초지반 (1) 강판 구조물이 놓일 기초지반은 구조물 및 뒷채움 하중을 포함한 전체 상부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며, 과도한 침하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지반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만큼 양질의 채움재로 치환하거나 개량,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2) 기초 지반을 굴착하여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굴착폭이 강판구조물 폭보다 3.0m 이상 넓어야 하며, 강판 바닥면이 암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바닥면에서 30cm이상 깊이까지 양질의 자갈질 모래로 치환한다. (3)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반은 연약층과 암반이 교차하는 부분을 가급적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약층 구간에는 양질의 모래, 자갈을 잘 다져서 형성하고, 암반 구간은 굴착 후 모래자갈로 느슨하게 포설하여 전 구간에 걸쳐 상대적인 변위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4) 상부도피 두께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부등침하를 예상하여 구조물 바닥면에 일정량의 캠버를 둘 수 있다. 이 때 캠버의 양은 구조물 총 길이의 1% 이내로 한다.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그림 5-2-7 기초지반 조건에 따른 처리방법 예 3.1.2 베딩 (1) 폐합단면 구조물을 적용할 경우는 기초지반과 구조물 바닥면 강판사이에 투수성이 좋고, 입도분포가 양호한 사질토를 이용하여 베딩(bedd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베딩 재료의 최대치수는 강판 골 피치(pitch)의 1/2 ('표준형' 강판 75mm, '대골형' 강판 190mm)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림 5-2-8 베딩 시공 (2) 베딩의 두께는 구조물 중앙부에서 0.6m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강판과 접하는 부분은 7~15cm 정도 두께로 모래(직경 15mm 이하)층을 느슨하게 조성하여 강판 골 사이가 흠으로 완전히 충전 될 수 있도록 한다. (3) 구조물 형상에 따라 다르나, 하부 강판의 곡률반경이 변하는 점 사이의 거리를 베딩의 폭으로 하며, 원형 구조물에서는 강판 측면하부(헌치, haunch)의 다짐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부분까지 베딩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u>3.1.3 뒷채움</u> (1) 구조적 뒷채움부의 시공은 본 시방서 3-7절 기준에 따르며, 이에 따라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그 밀도는 3층 또는 50m³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시험다짐을 통해 기준 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지반공학 분야 특급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한층 다짐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3) 뒷채움부는 피토고가 3.5m이하인 경우에는 SB-1을 사용하고, 피토고가 3.5m이상인 경우에는 노상토를 사용할 수 있다. (4) 뒷채움부 다짐 작업 중에는 강판 벽체로부터 0.6m 이내에 다짐 장비를 제외한 중장비의 주행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측면 다짐 시 다짐장비는 구조물 길이방향과 나란하게 주행시켜야 하며, 상부다짐 시에는 구조물 길이방향과 직각으로 주행시키도록 한다. (5) 구조물 양측의 다짐높이 차이는 한층 다짐두께 이하이어야 하며, 편도압으로 인한 구조물 변형 시에는 하중을 제거하여 단면형상을 바로잡은 후 다시 다짐을 실시하도록 한다. <u>3.1.4 토피부</u> (1) 강판 구조물 천단부(crown)에서 최소토피 두께까지의 영역은 구조적 뒷채움부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토피부 다짐 시 장비는 구조물의 축과 직각방향으로 주행시키고, 최소토피두께가 확보되기 전에는 진동다짐을 하지 않는다. (3) 최소토피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짐 장비를 제외한 중장비의 구조물 상부 통행을 금지해야 하며, 중량물을 야적해서는 안된다. <u>3.2 개단면 구조물의 기초부</u> <u>3.2.1 콘크리트 기초</u> 개단면(아치형 단면) 구조물의 경우 강판 벽체를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베이스채널 간격은 측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u>3.2.2 강판과 기초의 연결</u> (1) 강판과 기초콘크리트는 베이스채널(base channel)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2) 베이스채널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매설앵커와 함께 설치하며,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한 경우에는 매입된 앵커로 고정시킨 앵글(anchored connection angle)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채널은 강판과 직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그림 5-2-9 베이스채널을 이용한 기초연결부 3.3 강판 조립 및 기타 3.3.1 자재의 검수 및 현장 준비 (1)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아래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이 때, 아연도금된 강판재와 부속자재에 대해서는 KS D 0210의 중량법(직접법), 또는 염화안티몬법(간접법)에 따른 아연도금 부착량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발급)를 첨부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에는 도막게이지를 이용하여 도금두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강판의 두께와 수량 ② 강판 단부 및 볼트 구멍 마감 상태 ③ 강판 도금 상태 및 도금량 ④ 볼트, 너트 등 부속품의 규격 부합 여부 (2) 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서는 반입 자재의 보관 위치, 크레인 등, 소요 장비의 작업 위치, 뒷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출로 등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3) 강판은 변형·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취급해야 하며, 강판을 설치하는 중에도 무거운 물체나 단단한 물건으로 타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손상된 강판과 아연도금이 벗겨진 강판은 교체하도록 한다. 3.3.2 강판 조립 (1) 강판 조립은 설치도면 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하류측(낮은 쪽)에서 상류측(높은 쪽)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지대, 또는 강선을 이용하여 설계단면 형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강판은 일반적으로 규격과 곡률이 모두 다르므로 조립시에는 반드시 설치도면에 따라 순서와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3) 강판을 서로 포깁 때는 빈틈을 최소화해야 하며, 한 지점에서 4장 이상의 강판이 동시에 포개져서는 안 된다. 강판 연결부에는 개스킷이나 패킹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곡률반경이 변하는 위치 외에는 구조물 길이방향으로 이음부의 위치가 연속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5) 볼트의 공칭 조임토크는 200~400N·m로서 전체에 걸쳐 균등한 토크로 조립하여야 한다. 강판 조립이 완료된 후에는 감독자 입회 아래 길이방향 이음부와 원주방향 이음부에 대해 각각 볼트 전체수량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토크게이지로 검사하여야 하며, 공칭토크 범위 밖의 볼트 수량이 검사 대상 수량의 10% 이상 일 경우는 전체 볼트를 대상으로 다시 조임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단면 변화 측정 3.4.1 파형강판구조물은 ①조립 직후, ②뒷채움(토피부 포함) 도중, ③시공 완료 직후에 단면의 형상 크기 변화를 측정하여야 한다. 3.4.2 조립이 끝나면 뒷채움을 시작하기 전에 단면 크기를 측정하여 설계 형상에서 5% 이상 벗어난 경우에는 볼트를 느슨히 풀어 형상을 맞춘 후 다시 조립하여야 한다. 3.4.3 뒷채움이 시작되면 토피부 시공을 마칠 때까지 각 층 다짐 직후에 구조물 내 단면 크기를 측정(상이한 위치의 3개소 이상 측정)하여 변형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시공 도중 및 완료 후 허용되는 변형량의 기준은 표 5-2-21과 같다. 단면 변형량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변형량을 기준 이내로 줄여야 한다. 표 5-2-21 시공 도중, 직후의 구조물 변형량 허용 범위 <table><tr><th>분 류</th><th>허용하는 단면 변형량</th></tr><tr><td>표준형 강판 적용시</td><td>그림 5-2-10에 정의된 구조물 높이(rise, R)의 5%이내 * 구조물 높이의 2%를 초과할 경우 ①모멘트 검토, ②세밀한 육안관찰을 통해 구조물 안정성 확인 후 시공 재개</td></tr><tr><td>대골형 강판 적용시</td><td>그림 5-2-10에 정의된 구조물 높이(rise, R)의 2%이내</td></tr></table>	분 류	허용하는 단면 변형량	표준형 강판 적용시	그림 5-2-10에 정의된 구조물 높이(rise, R)의 5%이내 * 구조물 높이의 2%를 초과할 경우 ①모멘트 검토, ②세밀한 육안관찰을 통해 구조물 안정성 확인 후 시공 재개	대골형 강판 적용시	그림 5-2-10에 정의된 구조물 높이(rise, R)의 2%이내		
분 류	허용하는 단면 변형량								
표준형 강판 적용시	그림 5-2-10에 정의된 구조물 높이(rise, R)의 5%이내 * 구조물 높이의 2%를 초과할 경우 ①모멘트 검토, ②세밀한 육안관찰을 통해 구조물 안정성 확인 후 시공 재개								
대골형 강판 적용시	그림 5-2-10에 정의된 구조물 높이(rise, R)의 2%이내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원형 수평타원 파이프아치 아치 낮은아치 높은아치 언더패스 배형 수직타원 합성형 웅벽기초 박스형 그림 5-2-10 파형강판구조물 적용단면 (S=폭-Span, R=높이-Rise) 3.5 기타 사항 3.5.1 강판 이음부 또는 볼트 구멍을 통해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이음부를 대상으로 아스팔트 역청재료 도포 등 적절한 표면 방수 처리를 한다. 필요할 경우는 토피부와 뒷채움부에 방수막을 매설하여야 한다. 3.5.2 주변 수위가 높아 부력이 작용할 경우는 양압력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구조물의 자중을 증대시키거나 앵커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5.3 강판 부재의 부식이나 손상이 염려되는 환경에서 구조물을 시공해야 할 경우는 강판 두께를 늘리거나 보호막을 피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4 강판구조물을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 등 강성 거동체에 연결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구조물 접합부에 대한 응력검토를 통해 적절한 방식의 조인트를 설치하거나 보강하여야 한다. 3.5.5 합성형 구조물 시공시 뒷채움 재료로서 SB-1(2)의 재료를 사용한다.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2) 유공관의 주변재료 유공관 주변의 여과재료는 $\frac{D_{85}(\text{여과재료})}{d} > 2$ 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d는 유공관의 공경(mm) 또는 이음 간격(mm)을 말한다. 2.1.2 토목섬유 (1) 토목섬유는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흡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멍의 크기를 갖은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로서 토목섬유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frac{D_{EOS}(\text{여과재료})}{D_{85}(\text{노상토})} < 0.5 \sim 1.0$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frac{K_g(\text{여과재료})}{K_s(\text{노상토})} > 10 \sim 100$ 단, D_{EOS}(여과재료)는 토목섬유의 유효구멍크기(시료의 95% 통과 입경으로 정함)이며 K_s와 K_g는 노상토와 토목섬유의 수직 투수계수(cm/sec)를 말한다. (2)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은 표 6-3과 같다. 표 6-3 배수용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품질기준</th><th>시험방법</th></tr><tr><td>재질</td><td>-</td><td>Polyester, Polypropylene</td><td>KS K 0210</td></tr><tr><td>내후도</td><td>%</td><td>인장강도의 95% 이상</td><td>KS K 0706 (250시간노출)</td></tr><tr><td>두께</td><td>mm</td><td>1.8 이상</td><td>KS K 0506</td></tr><tr><td>인장강도</td><td>kg</td><td>45 이상</td><td>KS K 0520(Grab법)</td></tr><tr><td>신도</td><td>%</td><td>50 이상</td><td>KS K 0520(Grab법)</td></tr><tr><td>투수계수</td><td>cm/sec</td><td>$\alpha \times 10^{-1}$ 이상</td><td>KS F 2322</td></tr><tr><td>봉합강도</td><td>kg</td><td>인장강도 이상</td><td>KS K 0530</td></tr></table>				구분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재질	-	Polyester, Polypropylene	KS K 0210	내후도	%	인장강도의 95% 이상	KS K 0706 (250시간노출)	두께	mm	1.8 이상	KS K 0506	인장강도	kg	45 이상	KS K 0520(Grab법)	신도	%	50 이상	KS K 0520(Grab법)	투수계수	cm/sec	$\alpha \times 10^{-1}$ 이상	KS F 2322	봉합강도	kg	인장강도 이상	KS K 0530	(2) 유공관의 주변재료 $\frac{D_{85}(\text{여과재료})}{d} > 2$ 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d는 유공관의 공경(mm) 또는 이음 간격(mm)을 말한다. 2.1.2 토목섬유 (1) 토목섬유는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흡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멍의 크기를 갖은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로서 토목섬유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frac{D_{eos}(\text{여과재료})}{D_{85}(\text{노상토})} < 0.5 \sim 1.0$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frac{K_g(\text{여과재료})}{K_s(\text{노상토})} > 10 \sim 100$ 단, D_{eos}는 토목섬유의 유효구멍크기(시료의 95% 통과입경으로 정함)이며 K_s와 K_g는 노상토와 토목섬유의 수직 투수계수(cm/sec)를 말한다. (2)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은 표 5-3-1과 같다. 표 5-3-1 배수용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품질기준</th><th>관련시험규격</th></tr><tr><td>재질</td><td>-</td><td>PP, PET</td><td></td></tr><tr><td>두께</td><td>mm</td><td>1.8 이상</td><td>KS K 0506</td></tr><tr><td>인장강도 (Grab강도)</td><td>kg · f</td><td>45</td><td>KS K 0520</td></tr><tr><td>중량</td><td>g/m²</td><td>단섬유 300이상 (장섬유 200이상)</td><td>KS K 0514</td></tr><tr><td>신도</td><td>%</td><td>50 이상</td><td>KS K 0520</td></tr><tr><td>투수계수</td><td>cm/sec</td><td>$\alpha \times 10^{-1}(\alpha=1 \sim 9)$</td><td>KS F 2322 준용</td></tr><tr><td>봉합강도</td><td>kg · f</td><td>인장강도 이상</td><td>KS K 0530</td></tr><tr><td>내약품성</td><td></td><td>-</td><td>KS M 3506</td></tr><tr><td>시험빈도</td><td>/1회</td><td>20,000m² 마다</td><td></td></tr></table> 2.1.3 기타재료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타 여과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구분	단위	품질기준	관련시험규격	재질	-	PP, PET		두께	mm	1.8 이상	KS K 0506	인장강도 (Grab강도)	kg · f	45	KS K 0520	중량	g/m²	단섬유 300이상 (장섬유 200이상)	KS K 0514	신도	%	50 이상	KS K 0520	투수계수	cm/sec	$\alpha \times 10^{-1}(\alpha=1 \sim 9)$	KS F 2322 준용	봉합강도	kg · f	인장강도 이상	KS K 0530	내약품성		-	KS M 3506	시험빈도	/1회	20,000m² 마다		o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 변경으로 내용수정 (도로연구소 2001.9) o 도연시 18604-31503('01.9.4) 및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치 수정		수정
구분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재질	-	Polyester, Polypropylene	KS K 0210																																																																															
내후도	%	인장강도의 95% 이상	KS K 0706 (250시간노출)																																																																															
두께	mm	1.8 이상	KS K 0506																																																																															
인장강도	kg	45 이상	KS K 0520(Grab법)																																																																															
신도	%	50 이상	KS K 0520(Grab법)																																																																															
투수계수	cm/sec	$\alpha \times 10^{-1}$ 이상	KS F 2322																																																																															
봉합강도	kg	인장강도 이상	KS K 0530																																																																															
구분	단위	품질기준	관련시험규격																																																																															
재질	-	PP, PET																																																																																
두께	mm	1.8 이상	KS K 0506																																																																															
인장강도 (Grab강도)	kg · f	45	KS K 0520																																																																															
중량	g/m²	단섬유 300이상 (장섬유 200이상)	KS K 0514																																																																															
신도	%	50 이상	KS K 0520																																																																															
투수계수	cm/sec	$\alpha \times 10^{-1}(\alpha=1 \sim 9)$	KS F 2322 준용																																																																															
봉합강도	kg · f	인장강도 이상	KS K 0530																																																																															
내약품성		-	KS M 3506																																																																															
시험빈도	/1회	20,000m² 마다																																																																																

기정				개정(안)				사유	비고			
2.2 유공관 2.2.1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또는 KS F 4409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것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기준은 표 6-4과 같다. 표 6-4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 기준				2.2 유공관. 2.2.1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KS M 3404 또는 KS F 4409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것을 사용한다. 2.2.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기준은 표 5-3-2과 같다. 표 5-3-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 기준				o SI 단위계 병용 o 구멍의크기 : 3이하 → 5이하 - 3mm이하 제품 제작의 어려움. 구멍이 막혀 배수에 지장 초래 o 허용변형량 시험 삭제 - 시험법 부재로 현장확인 곤란하며, pipe stiffness 시험과 동일 개념임.	수정			
구분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구분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재질	-	고밀도 폴리에스틸렌 (H.D.P.E)	-	재질	-	고밀도 폴리에스틸렌(H.D.P.E)	-					
규격	mm	200±5(내경)		규격	mm	200+5(내경)	-					
밀도	g/cm³	0.94 이상		밀도	kN/m³(g f/cm³)	9.2 이상(0.94 이상)	-					
인장강도	kgf/cm²	250 이상	KS M 3006	인장강도	MPa(kgf/cm³)	25 이상(250 이상)	KS M 3006					
충격강도	kg·cm/cm²	12 이상	KS M 3055	충격강도	J/cm²(kgf·cm/cm²)	118 이상(12 이상)	KS M 3055					
Pipe stiffness	kg·cm/cm²	3.5 이상	ASTM D 2412 (5% 변형시)	Pipe stiffness	mJ/cm²(gf·cm/cm²)	34 이상(3.5 이상)	ASTM D 2412					
구멍의 크기	mm	3 이하	-	구멍의 크기	mm	5 이하	-					
허용변형량	mm	10 이하	-									
2.3 기타 재료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타 여과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설계도서와 동일한 구배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3.1.3 유공관은 중형(Bell)의 단부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폐접합형으로 하여야 한다. 3.1.4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감로 막아야 한다. 3.1.5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6 도로의 종방향 맨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 3.1.7 맨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중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맨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3.1.1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3.1.3 유공관은 중형(Bell)의 단부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u>규정된 대로 폐접합형으로 하여야 한다.</u> 3.1.4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감로 막아야 한다. 3.1.5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u>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u> 이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6 도로의 종방향 맨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 3.1.7 맨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중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맨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				수정
									수정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6-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비탈면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럼 및 벤치플럼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제출물 1.3.1 본 지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지방서 14-1절, 14-3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지방서 4-7절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u>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u> 3.1.2 기 초 <u>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지방서 4-7절에 따른다.</u> 3.1.3 거푸집 본 지방서 7-4절 3.3에 따른다. 3.1.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지방서 7-5절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u>구배</u>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5-4 비탈면 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서는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V형 측구, 산마루 측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럼 및 벤치 플럼 <u>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u> 1.3 제 출 물 1.3.1 본 지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지방서 14-1절, 14-3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2.2.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u>KS F 4010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u> <u>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u>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본 지방서 3-7절에 따른다. 3.1.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의 경우에는 <u>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여</u>,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u>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u> 3.2 기 초 <u>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본 지방서 3-9-2절에 따른다.</u> 3.3 거푸집 본 지방서 6-3-3절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타설 3.4.1 본 지방서 6-4절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u>경사</u>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o 배수용 소구조물이 5-1 노면 배수와 5-4 비탈면배수로 구분 o 비탈면 배수용 측구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규정추가 o 제품의 품질 규정을 엄격히 함 o 시공성 확보 o 지방서 절 변경에 따라 변경됨 o 용어변경 :구배⇒경사	추 가 추 가 수 정 수 정 수 정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4) 구배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 4-7절에 따른다. 3.3 V형 측구 시공 3.3.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u>구배로</u> 낮은 쪽에서 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3.2 설계도서에 명시된 <u>선형으로</u> 시공하여야 한다. 3.3.3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5 <u>측구의 콘크리트 치기작업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u> 3.3.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5 산마루 측구 시공 3.5.1 비탈면으로 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 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5.3 측구 완성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4.4 <u>경사가</u>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u>콘크리트를</u> 쳐야 한다. 3.4.5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 이상의 철근을 적정길이로 3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 강도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 3-7절에 따른다. 3.7 V형 측구 시공 3.7.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u>경사로</u> 낮은 쪽에서 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명시된 <u>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에</u> 시공하여야 한다. 3.7.3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7.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5 <u>신축이음부에 철판(3t)을</u> 설치하고 일정구간 일체형으로 시공한다. 3.7.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 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8 산마루 측구 시공 3.8.1 비탈면으로 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8.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측구 완성후 <u>되메우기시에는 표면수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측구 상단보다 낮지 않도록 해야하며,</u>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 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9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5-4-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table><tr><th>항 목</th><th>규격치(mm)</th><th>측 정 기 준</th><th>비 고</th></tr><tr><td>기준고</td><td>±30</td><td rowspan="2">·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td><td rowspan="4"></td></tr><tr><td>폭 a3</td><td>-50</td></tr><tr><td>높이 h,h´</td><td>-30</td><td rowspan="2">·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td></tr><tr><td>연장 L</td><td>-20</td></tr></table>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폭 a3	-50	높이 h,h´	-30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연장 L	-20	o 용어변경 :구배⇒경사 o 다우웰 철근직경, 간격을 규정함 o 용어변경 :구배⇒경사 o 현장여건 반영 o span별 분리시공은 선형불량 우려가 있고 해당공정에 영향을 미치므로일체형으로 시공토록함 o 되메우기를 측구보다 낮게하여 표면수가 측구주변에 고이는 현상이 자주 발생됨 o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03(건설교통부)에 의거 내용추가		수 정 추 가 수 정 수 정 수 정 추 가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폭 a3	-50																				
높이 h,h´	-30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연장 L	-20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5-5 시공시 배수 5-5-1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서는 흙쌓기 작업중에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일반 흙쌓기 공사중 배수시설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차 수 1.3.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3.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3 비가 났을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1.3.4 땅깁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5-5-2 물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방서는 구조물기초 터파기공사시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물막이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o 시공중 재해 예방을 위해 시공시 배수 항목 추가	추	가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u>2.2 차 수</u> <u>2.2.1 시공자는 터파기 작업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u> <u>널말뚝은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 <u>2.2.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u> <u>2.2.3 시공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u> <u>2.2.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u>5-5-3 물푸기</u> <u>1. 일반사항</u> <u>1.1 적용범위</u> 본 시방서는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에 적용한다. <u>2. 시 공</u> <u>2.1 시공일반</u> 물푸기작업에 대하여는 시공계획과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u>2.1.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u> <u>2.1.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중은 물론이고, 타설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u> <u>2.1.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u> <u>5-5-4 가물막이</u> <u>1. 일반사항</u> <u>1.1 적용범위</u> 본 시방서는 구조물 및 교량 건설을 위한 가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u>1.2 참조규격</u> <u>KS F 4603 H형강 말뚝</u>				

기 정	개 정(안)	사 유	비 고
	<u>1.3 제출물</u> <u>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u>2. 재 료</u> <u>2.1 콘크리트</u> <u>본 시방서 13-4절, 13-5절에 따른다</u> <u>2.2 철 근</u> <u>본 시방서 13-10절에 따른다.</u> <u>2.3 강 재</u> <u>본 시방서 13-11절, 13-12절에 따른다.</u> <u>3. 시 공</u> <u>3.1 시공일반</u> <u>가물막이 시설에 대하여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u> <u>3.2 차 수</u> <u>3.2.1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u> <u>3.2.2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u> <u>3.2.3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중(목측관 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3.2.4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 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은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u> <u>3.2.5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u>3.2.6 수중부에 설치되는 시설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수중촬영 및 기타 부속자재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한 후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u>		

